



사업자 권리 장전 및 조사 행동 수칙

귀하는 사업자로서 다음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조사관으로부터 직업상 적합하고 정중한 대우를 받을 권리 및 조사관을 마찬가지로 대우해야 할 의무.
2. 방문과 동시에 조사관의 신분과 조사의 목적을 통지받을 권리.
3.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조사 내용에 정통하고 공평하며 기관의 규정을 공정하게 일관적으로 집행하는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을 권리.
5. 뉴욕시의 식품 안전 규정, 위반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6. OATH 보건 법원(OATH Health Tribunal)에 위반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을 권리.
7. 불필요한 과정 없이 가능한 간결하게 조사를 마칠 수 있는 권리.
8. 조사와 관련한 합리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을 권리 및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을 권리.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장비를 옮기거나 해체하였을 경우, 조사관은 장비를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거나 다시 조립할 것입니다.)
9. 영어가 아닌 언어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필요한 경우 조사관은 언어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귀하와 의사소통할 것입니다.
10.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익명으로 조사관의 업무나 행동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권리.

귀하가 받은 조사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피드백 서비스(nyc.gov/customer-survey)를 이용해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